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규정

2019. 2. 20 제정 2019. 11. 6 개정

2024. 6. 5 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의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교육과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덕성여자대학교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9.11.6>

- 1. 비교과교육과정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비교과교육과정의 신설,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3. 비교과교육과정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- 제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대학교육혁신원장과 교육혁신성과관리센터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그 외의 위원은 대학교육혁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, 사회수요 및 학문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<개정 2019.11.6, 2024.6.5.>
 -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9.11.6>
- 제4조 (위원장 및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. <개정 2024.6.5.>
 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 -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5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6조 (시행)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. 다만, 교육혁신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결재 전 해당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야한다.
- 제7조 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 - ② 간사는 총장이 임명한다.
- 제8조 (소위원회) 필요한 경우 이수영역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제9조 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.

부 칙<2019. 2. 20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 11. 6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4. 6. 5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